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07. 06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09. 06. 12
- 다. 위원회회부 : 2009. 06. 16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구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07. 02. 15 규칙 제464호)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운수관리팀의 소속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되었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부위원장을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변경 (안 제3조제2항)
- 나.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3호,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1(사무분장표)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개정문안 : 불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생략

5. 검토결과

○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구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07. 2. 15일 규칙 제464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운수관리팀의 소속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되었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임.

○ 주요내용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위원회 부위원장을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3호,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구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07. 2. 15일 규칙 제464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운수관리팀의 소속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되었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1-사무분장표)

국	담당관·과	분 장 사 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단속종합계획 수립 2. 주차단속원 지도감독(공익요원 포함) 3. 주차단속 이의진술 처리 4.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 5. 장기 미반환차량 처리 6.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7. 견인보관소 위·수탁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9. 공영, 노상, 노외(시설주차장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차장 현황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11. 건축물부설주차장 전반에 관한 사항 12.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위·수탁 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 14.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15.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16. 택시자격 정지 및 해제 17.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항 18. 사업용차량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20. 자가용 사용신고 미필 과태료 부과 21.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2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에 관한 사항 23. 사업용차량 및 운수업체 지도단속에 관한사항 (마을버스, 택시,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24. 교통불편 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5. 버스전용차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27.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8. 체납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9. 운수과징금 이의신청 처리 30.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